

#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4
----------	------

제출연월일 : 2025. 5.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명칭 등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등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3조)
- 1)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심의위원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6조의2)
- 1)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 및 의결하여 저소득층 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라.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7조 및 제9조)

## 3. 제정안(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일부개정안)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5. 3. 24. ~ 2025. 4. 14.(22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소관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중 “위원회” 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 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원회” 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김윤정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다연 (031-5182-158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남시 <u>의료급여위원회</u>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2. (생 략)</p> <p>3. <u>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u></p> <p>4. · 5. (생 략)</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u></p>	<p>제1조(목적) ----- ----- ----- ----- ----- <u>의료급여</u> <u>심의위원회</u> ----- ----- -----.</p> <p>제2조(기능)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의료급여법 시행령</u>」 제7조 <u>제3항에 관한 사항</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 ----- ----- <u>구성한다.</u></p>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삭 제>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삭 제>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삭 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삭 제>

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삭 제>

6. 하남시 소속 공무원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소관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

<신 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

협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서 추천한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

원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

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

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

위원회-----

-----

-----

-----.





## 관계법령 발췌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4. 20.>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  
산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 「의료급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  
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3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 ▣ 0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p.361)

가. 목적

-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  
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시행령 제28조제4항]

나. 설치방법

-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 [시행령 제35조]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며,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

※ 사후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할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므로 결정사항은 취소하여야 함

- 단,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보장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

○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심의

-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정리보류 관련 사항

-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 4 「2025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 ■ II. 보장기관 등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침 p.11)

나.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 설 치

○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각각 둠

○ 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단, 동 위원회의 위원이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출 것)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2) 구성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 (위원장 :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타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함

## (3) 심의 사항

○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